

# [사실은 이렇습니다] 제22대 국선 부정선거 의혹 바로 알기

## 1.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

○ 선관위 직원들(실명과 전화번호를 같이 공개하며)이 ○○정당 표를 □□ 정당 쪽으로 3배수 또는 4배수, 6배수 등마다 1표씩 조작하도록 선거관리시스템을 제작하였음.

※ 정상적인 선거관리시스템이라면 개표결과 합산 시 곱하기, 나누기, 빼기의 연산이 없어야 함. 일주일이면 검증 가능

○ 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·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·거소투표·재외투표·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음.

○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하여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·대조할 수 있음.

○ 또한, 시·도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입력 수치와 교차 확인하여 개표결과 이상유무를 확인·대조하고 있음.

○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

○ 개표과정에 수많은 공무원, 일반 선거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과 참관인이 참여하고 있고, 개표상황표 및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·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, 어떠한 가정하에서도 선거결과 조작은 발생할 수 없음.

## 2.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선거결과

---

- 통계학상 대수의 법칙\*에 따르면 사전투표 결과가 본투표 결과와 같아야 한다. 하지만 실제 결과를 분석하면 사전투표는 □□정당이 승리 하고 본투표는 ○○정당이 승리하도록 나타나고 있음. 이는 통계학상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임.

\* 대수의 법칙 : 큰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의 평균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와 확률 분야의 기본개념(위키피디아)

---

- 선거결과는 유권자의 표심이 집합된 것으로 선관위는 투표결과를 단순히 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.
-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 등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,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음.(대법원 2022.07.28. 선고 2020수30 판결)

### 3. 새벽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

- 선관위 직원들이 CCTV를 조작하여 보이지 않게 하고, 새벽에 조작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음.

○ 은평구선관위의 경우 4. 6.(토) 17: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 총 1만 9천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하였고,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. 7.(일) 01:50경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으며, 4. 7.(일) 02:34~03:45까지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함.

○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·접수·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·입회하였는바,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.

※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「공직선거법」 제237조(선거의 자유방해) 및 「형법」 제137조(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) 위반혐의로 4. 8. 은평경찰서에 고발

#### 회송용 봉투 접수·투입·보관 절차

- ▶ 4. 5.(금) 1일차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전국의 모든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(이하 회송용봉투)는 접수지 우편집중국, 광역센터, 배송지 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되었으며, 우체국은 이를 4. 6.(토)에 각 구·시·군선관위로 일제히 배달
- ▶ 구·시·군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회송용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, 봉투의 봉합 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접수함. 접수가 모두 끝나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·봉인을 차례로 해제하고 회송용봉투를 투입한 후, 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다시 봉쇄·봉인
- ▶ 회송용봉투는 통상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매일 배달되며, 구·시·군선관위는 그때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
- ▶ 이는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절차로, 모든 과정에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 및 입회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, 시·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CCTV모니터로 투명하게 공개

#### 4. 투표함에 봉인지 잔여물

---

○ 개함 전인 투표함에 봉인지 제거 흔적(잔여물)이 남아 있어 부정선거가 의심됨.

---

- 투표함에 봉인지 잔여물이 남아있던 건 중 일부는 봉인지 부착 부위의 특성(굴곡짐)으로 인해 봉인지를 잘못 부착하여 다시 부착하였던 사안으로 처음 붙였던 봉인지의 잔여물이 남아있었던 것이며,
- 일부는 사전투표소의 관외사전투표함으로 사용했던 대형투표함을 선거일 투표소 투표함으로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에 묻은 봉인지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사용하였던 것임.
  - 관외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시작 전 사전투표참관인과 함께 투표함 투입구를 제외한 뚜껑 양쪽을 봉인하며, 사전투표 종료 후에는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인계를 위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게 되고, 이 때 봉인지 잔여물이 남게됨.
  - 이 관외사전투표함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재사용하면서 봉인지 잔여물을 깨끗이 지우지 않고 재사용할 경우 그 상황을 모르는 개표참관인들이 투표함 표면의 봉인지 잔여물을 보고 투표함을 사전에 개함하였다가 재봉함한 것으로 오인한 것임.
  -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개시 전 투표함을 봉인할 때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들에게 빈 투표함임을 확인시킨 뒤 자물쇠로 봉합하고 그 위에 투표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를 부착하기에, 투표록의 봉인 관련 기록상 서명한 투표참관인 성명과 봉인지에 서명된 투표참관인 성명 등이 일치한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봉합·봉인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투표함임.

## 5.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선거통계시스템 대국민용)에서 공개된 투표자수 및 투표율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현상

-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4. 10. 당일 투표자수 감소했다가 증가함.

조회시각	17:40분	18:25분	18:52분
당일투표수	14,367,809	6,273,801	14,641,031
사전+우편투표수	14,017,445	5,983,305	13,208,710
계	28,385,254	12,257,106	27,849,741

-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선'거통계시스템 대국민용)의 선거일 투표자수는 투표 진행 중 1시간 단위로 잠정 투표자수를 공개하고 있음.

※ 보고 시각 : 7시, 8시, 9시, 10시, 11시, 12시, 13시, 14시, 15시, 16시, 17시, 18시 20분(투표마감이 늦어지는 경우 투표 마감 후 즉시 보고)

- 이는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등이 매 보고 시각 15분 전까지 전화로 읍·면·동선관위에 보고한 데이터를 구·시·군선관위에서 취합·집계하여 투개표보고시스템에 입력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선거통계시스템 대국민용)를 통해 잠정 투표자수가 공개됨.

※ 보고 방법 : 투표자수 보고시스템의 시간대별 집계 자료의 기본 셋팅은 0으로 되어 있으며, 시간대별 입력 시 이전 시간대 자료와 현재 시점의 투표자수를 포함하여 수기로 잠정투표자수를 입력함.

(ex : 13시 현재 투표자수 1,000명 입력, 추가 투표자수 50명, 14시 기준 투표자수 입력 시 1,050명을 수기 입력)

- ※ 투표자수를 오입력한 경우 수정 보고할 수 있으며, 수정 요청 시 해당 위원회의 투표자수는 수정 전 투표자수가 공개되며, 수정 보고 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선거통계시스템 대국민용)에서 잠정 투표자수가 재공개됨.

- 이후 개표소에서 모든 투표함의 개표가 완료되면 실제 투표자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라 잠정투표자수를 최종투표자수로 변경함.
  - 17시 40분의 투표자 수는 17시 기준의 잠정 투표자 수이며 18시 25분의 투표자수는 18시 투표 마감 후 투표소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를 읍·면·동 선관위와 구·시·군선관위에서 입력할 때마다 합산된 투표자수가 표출된 자료이며, 18시 52분 투표자수 또한 입력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 투표자 수임.
- ※ 최종 투표자수는 실제 투표함을 개함하여 나온 투표자수를 기준으로  
4. 11. 12:00 기준 29,654,450명임.

## 6. 읍·면·동 선거인수보다 사전투표수가 더 많은 현상

---

○ 읍·면·동 선거인수보다 사전투표수가 더 많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개표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임.

---

○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인의 주소지 기준에 따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됨.

○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 구·시·군(구·시·군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 기준)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모두 관내사전투표로 분류되며,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한 해당 읍·면·동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수에 모두 포함됨.

※ B동, C동에 주소를 둔 선거인이 A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한 경우 A동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수로 집계되므로 A동 선거인수보다 사전투표수가 더 많을 수 있을 것임.

○ 따라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읍·면·동이 있는 이유는 관내 및 관외선거인 구분에 따른 결과일뿐 개표결과 조작이 아님.